유료방송 채널거래와 사후규제의 쟁점

윤성옥(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 1. 방송법상 채널거래 규제 : 의무 재송신, 채널운용
- o 채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방송법 제2조 20의2)
- o 재송신 : KBS, EBS 채널 의무재송신. 수개의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고시하는 1 개의 채널(방송법 제78조 제1항, 제2항)
- ※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 예외(방송법 제78 조 제3항)
 - ㅇ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 채널 구성(방송법 제70조 제3항)
 - ㅇ 방송통신위원회 고시한 공익채널 의무운용(방송법 제70조 제8항)
- *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 ①사회복지분야: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 ②과학·문화진흥분야: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아르떼(Arte)
 - ③교육지원분야: EBS 플러스1, EBS플러스2, EBS 잉글리시(English)
 - o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2개 이상) 포함(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ㅇ 지상파채널은 동시중계방송권 예외, 의무전송채널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저작권법 상 동시중계방송권

- o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 상 등을 송신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8호)
- ㅇ 방송사업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 공연권(제85조의 2) 인정
- o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지상파 재송신에서 공중송신권에 대한 부정
- ※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재송신 채널 안에는 지상파가 자체 제작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외주제작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프로그램, 단순히 사실보도에 불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뉴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ㅇ 동시재송신은 '동시중계방송권', 사후 재방송은 '복제권'을 적용하며 동시에 인정하지는 않음. 지상파 재송신이 특별규정인 공중송신권이나 동시중계방송권으로 보호되는 이상 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복제란 '일단 방송을 저장매체에 보관하였다가 사후에 재방송하는 것'이므로 실시간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실시

- 간 재송신은 '동시중계방송권', 사후 재방송은 '복제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 ㅇ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3. 채널거래에서 가격규제
- o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재허가 조건 등에서 SO-PP 수신료 수익배분 25% 이 상 권고
- ㅇ 채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거래 가능성에 대한 판단
 - 지상파채널 vs PP채널
 - 종편채널 vs 일반PP
 - 인기채널 vs 비인기채널